

보도시점 2023. 12. 27.(수) 10:00 / 배포 2023. 12. 27.(수) 08:30

##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내용을 신설하여 상생협력의 새 장 열어 -
- 철도(궤도차량)제작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와 '22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이 필요한 철도(궤도)차량제작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였고 거래현실, 시장상황, 관련 법령의 변화 등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큰 자동차업, 방송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아울러 지난 10월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계약사항과 표준연동계약서 등 관련 양식을 금년 새로이 제정된 업종과 기보급 되어 있는 5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일괄 추가함으로써 연동제의 시장안착을 도모하였다.

먼저, 신규로 제정된 비금속광물 제조업의 경우, 건설, 자동차, 전자, 전기, 기계 등 제품제조업체인 원사업자와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가 빈번하며 제조에 따른 검사지연, 대금지급지연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경영난에 처하는 등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금속 광물 제조업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품 납품에 대한 수령지연 시 수급사업자의 책임감경 등에 관한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검사지연 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시 지연배상금 추가 지급 등의 내용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철도(궤도)차량 제작업의 경우, 제조위탁 시 원사업자의 사전정보 미제공 및 부품공급 차질로 인해 계약기간 연장과 납기 지연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철도(궤도)차량 제조 위탁 전 원사업자의 사전정보 및 부품조달계획 제공, 제조 위탁 후 부당한 위탁취소와 부당반품 금지 및 이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책임 감경과 원사업자의 책임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였다.

그 외 제조업종인 자동차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조업 표준하도급 계약서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금형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1년 제정된 '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뿌리산업인 금형업체의 권익향상을 도모하였다.

특히, 자동차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약정 기간 혹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부품의무 공급기간'이 경과한 부품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인 부품업체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부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용역업종인 방송업, 애니메이션제작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경우,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등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반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하여 운영 중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인 제작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증진을 도모하였다.

건설업종인 전기공사업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현장근로자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 속한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금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내용 및 관련 표준 연동계약서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추가하는 동시에 업종별 소관법령

및 관계부처의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협상력 등의 거래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연동 의무 등 범위반이 사전에 예방되는 동시에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 이번에 제·개정된 14개 업종을 포함한 5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http://www.ftc.go.kr)) (해당 메뉴: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 <붙임> 1. 표준하도급계약서 의의 및 제·개정 배경  
2. 표준하도급계약서 업종별 제·개정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보름 (044-200-4945)
		담당자	사무관	이호 (044-200-4953)



-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현재 52개 업종에 보급되어 있음

— <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현황(52개 업종) > —

☞ 건설업종(7개)

- : ▶ 건설업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해외건설업 ▶ 조경식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제조업종(26개)

- : ▶ 자동차업 ▶ 전자업 ▶ 전기업 ▶ 조선업 ▶ 조선(제조임가공)업 ▶ 기계업 ▶ 섬유업  
▶ 건설자재업 ▶ 음식료업 ▶ 자가상표부착제품업 ▶ 화학업 ▶ 제1차금속업 ▶ 의료기기업  
▶ 정밀·광학기기업 ▶ 출판인쇄업 ▶ 해양플랜트업 ▶ 가구제조업 ▶ 의약품제조업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 제지업 ▶ 철근가공업 ▶ 방산업 ▶ 금형제작업  
▶ 골판지가공제조업 ▶ 파스너제조업

☞ 용역업종(19개)

- : ▶ 건축설계업 ▶ 엔지니어링업 ▶ 건축물유지관리업 ▶ 화물운송업 ▶ 화물취급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 ▶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 ▶ 상용SW유지관리업 ▶ 상용SW개발구축업  
▶ 게임용SW개발구축업 ▶ 애니메이션제작업 ▶ 방송업 ▶ 경비업 ▶ 광고업(TV·라디오 등)  
▶ 광고업전시 및 행사 ▶ 제품시각포장디자인업 ▶ 환경디자인업 ▶ 디지털디자인업 ▶ 내륙화물운송업

- 금년에는 관련 업계 요청 등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비금속광물제조업종과 철도(궤도)차량 제작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제정
-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자동차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 자동차업, 금형제조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물품제조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광고업(TV), 광고업(전시), 방송업, 애니메이션제작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전기공사업

## 1. 공통(14개 재·개정 업종규정)

- ①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 내용을 반영하여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
- ②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번 제·개정 14개 업종 외 기존 40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연동제 조항을 추가하고 표준연동계약, 표준미연동계약서를 첨부
- ③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로서 '당초 예상만큼 공급원가 등의 비용이 하락하지 않거나 그 하락폭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를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로 추가
-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중재 제도를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중재조항을 도입

## 2. 신규 제정 표준계약서의 특징적 내용

< 철도(궤도)차량 제작업, 비금속광물제조업\* >

\* 비금속광물제조 : 유리, 요업 등 제품

- ① 목적물 납품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수령을 거부·지연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감경 등에 대해 규정
  -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지연 등에 따른 손해 및 관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
-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지연한 경우에 목적물 납품일로부터 10일 경과 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

⇒ 원사업자의 검사 지연으로 인해 대금을 제때에 받기 어려운 수급사업자의 애로를 해소

③ 부당한 위탁 취소 및 부당 반품을 금지하고, 부당반품이 발생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책임감경 등 추가

⇒ 부당 반품 시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재납품 및 관리비용은 원사업자가 원칙적 부담

### **3. 그 밖에 업종별 주요 개정 사항**

#### <제조업종>

① 자동차업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수리부품시장 진입 여건 조성을 위해 약정 또는 부품의무 공급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부품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자동차관리법에 신설된 안정성 인증 및 튜닝부품 인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의 책임 사항을 규정

②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2021년에 제정된 「금형 제작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자동차업종, 건설자재업종, 자기상표부착제조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 <용역업종>

①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고 콘텐츠에 대한 시청률, 관객수 등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 방송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② 수급사업자의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안전의무를 명시

\* 광고(TV, 전시)업종, 건축물유지관리업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③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유류 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화주나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인도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화물운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국토교통부 협의사항 반영)

#### <건설업종>

① 수급사업자가 현장근로자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

② 원사업자가 일요일 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하고 발주자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